

#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7년 2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하는 희망·내일 키움통장 신규 모집

- 2017년 2. 6.~ 2.10. 첫 모집, 올해부터 가입 신청 기회는 많아지고,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부담은 가벼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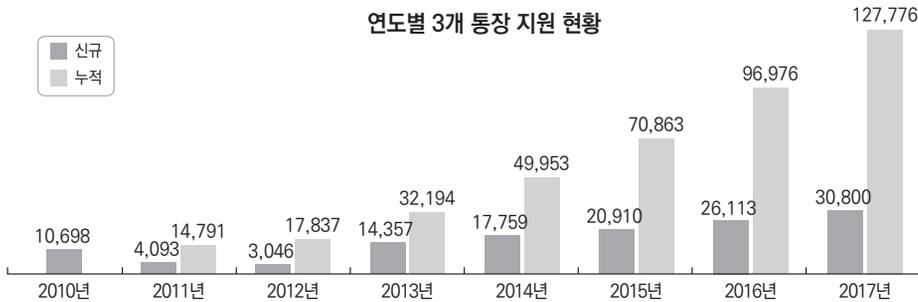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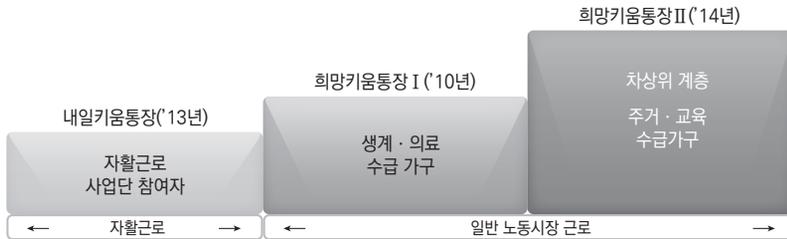
#### 【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성공 사례 】

- ◇ (희망키움통장 I) 10년 전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키우는 홀로 키우는 김○○ 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00년 지인의 소개로 희망키움통장 I 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녹즙 배달, 보험설계사, 꽃다발 판매 등으로 열심히 수입을 늘리면서 매달 1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2013년 탈수급한 동시에 통장 만기 지급금 1300만 원을 받아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보태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 김○○ 씨는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II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제2의 성공 계단을 오르고 있다.
- ◇ (희망키움통장 II) 한부모 가정인 전○○ 씨는 홀로 일하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던 중 2014년 희망키움통장II 모집 공고를 보고 사업에 참여했다. 만기 지급금 수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입 19개월 만에 통장을 해지했지만 그간 쌓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목돈으로 받아 주거비 대출을 일부 갚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그는 통장 홍보대사로 불리고 있다. 목돈 마련과 저축 습관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라고 주변에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내일키움통장) 상○○ 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와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었고,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를 키우며 가정의 역할까지 홀로 감당했다. 자활근로를 하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권유로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하게 됐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다. 3년 뒤 일반 기업에 취업한 그는 12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됐다. 상○○ 씨는 이 돈으로 자녀의 고가 치료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I·II와 내일키움통장

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2월 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0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 을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 가입 대상의 확대뿐 아니라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2010년 1만 1000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000명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2017년 모집 계획**

■ 사업 성과도 높다. 우선 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 만기 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2010년 66.7%, 2011년 69.0%, 2012년 69.1%, 2013년 이후 통장 해지 절차 진행 중으로 통계 미산출.

\*\*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한 자의 비율(2015년).

■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 전국적으로 총 3만 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 가구인 2만 6000 가구보다 5000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 희망키움통장 I 3000, 희망키움통장 II 2만 5000, 내일키움통장 3000가구.

■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 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 희망키움통장 II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 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및 연 2회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의무.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II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 통장별 가입 대상 및 지원 기준

(희망키움통장 I)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

### 지원액 예시

지원 예시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 원)	본인 저축 10+정부 지원 36 = 월 46만 원 ⇒ 3년간 약 1700만 원 +이자
	4인 가구 (월 소득 160만 원)	본인 저축 10+정부 지원 45 = 월 55만 원 ⇒ 3년간 약 2000만 원 +이자
최대 지원	3인 가구	본인 저축 10+정부 지원 50 = 월 60만 원 ⇒ 3년간 약 2200만 원 +이자
	4인 가구	본인 저축 10+정부 지원 61 = 월 71만 원 ⇒ 3년간 약 2600만 원 +이자

\*정부 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이수(연 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본인 저축 10 + 정부 지원 10 = 월 20만 원 ⇒ 3년간 720만 원 +이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 노동 시장으로 취·창업 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내역 예시

최대	본인 저축 10 + 정부 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15 = 월 45만 원 ⇒ 3년간 약 1620만 원 +이자
평균	본인 저축 10 + 정부 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8 = 월 38만 원 ⇒ 3년간 약 1368만 원 +이자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365, 자립지원과, 2017. 2. 6.

## II

###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증가

- 2015년 말 53%에서 2016년 말 81%로 28% 포인트 증가 -
- 미이행 사업장 166곳에 1차, 106곳에 2차 이행명령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81%로 2015년 말 53% 대비 28% 포인트 향상됐다고 밝혔다.

○ (이행률 변화) 20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했으나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 의무사업장 이행 현황

(단위: 개)

기준 시점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조사 불응	지자체 조사 중
		계	설치	위탁			
2015.12.	1143	605	578	27	538	146	-
	100%	53%	51%	2%	47%	-	-
2016.12.	1274*	1036	841	195	238	-	8
	100%	81%	66%	15%	19%		

\* 설치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 2015년 12월 기준 의무사업장 1143개와 조사 불응 사업장 146개(2016년 4월 명단공표) 및 지자체 추가 조사 사업장 140개 합산(의무 없는 사업장 등 155개 제외).

○ (2016년도 이행 현황) 각 지자체가 2016년 한 해 동안 미이행 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31개는 의무를 이행했고 238개는 미이행 상태이며 147개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824개 사업장은 당초 복지부가 통보한 미이행 사업장(538개)과 조사 불응 사업장(146개) 그리고 지자체 조사 시 추가된 사업장(140개) 포함.

\*\* 8개 사업장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확인 중인 사업장.

### 2016년도 미이행 등 사업장 이행 현황 조사 결과

(단위: 개)

조사 대상	계	미이행		조사 불응	지자체 조사 추가
	824	538		146	140
지자체 이행 여부 조사 결과	계	이행	미이행	의무 없음	조사 중
	824	431	238	147	8
	100%	52%	29%	18%	1%

■ 의무 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이행명령 부과 현황)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

차 이행명령을, 이 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의무 이행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 이행했고, 34개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 이행했으며, 6개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 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을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366, 보육기반과, 2017. 2. 6.

<b>III</b>	<b>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b> - 음압격리병실,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개
------------	--

■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 10일 관 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및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의 개정안 등.

■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신설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관리 능력	① 음압격리병실	2018. 12. 31.까지 500병상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전실, 면적 15㎡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
	②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가점 3점)
의료전달체계	③ 상급 - 비상급 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상급-비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진료 · 검사 등을 위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④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 의무	사전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제재 조항 신설(감점 5점)
의료서비스 질	⑤ 의료 서비스 질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에 의료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배점 5%)

### 기준 강화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존	개정안
	최소 기준	17%	21%
	만점 기준	30%	35%

\*질병 난이도에 따라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됨.

#### 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 면적 15㎡, 전실 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②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지정, 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 ③ 환자의 진료 · 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 · 검사 · 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 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 본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 - 비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④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었으며, 본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배점 5%)
- 이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 \*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⑥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 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 \*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
-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 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 그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 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2월 10일 관보 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설명회 개최 예정)

○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 10일 관보 게재와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법령정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369,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2017. 2. 8.

## IV

###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 마음건강센터가 함께합니다!

- 국립공주병원 내에 정신건강 교육, 검진, 상담, 캠프 등을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마음건강센터 개소(2. 23.)

■ 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훈)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음건강센터를 열고, 2월 23일(목)에 개소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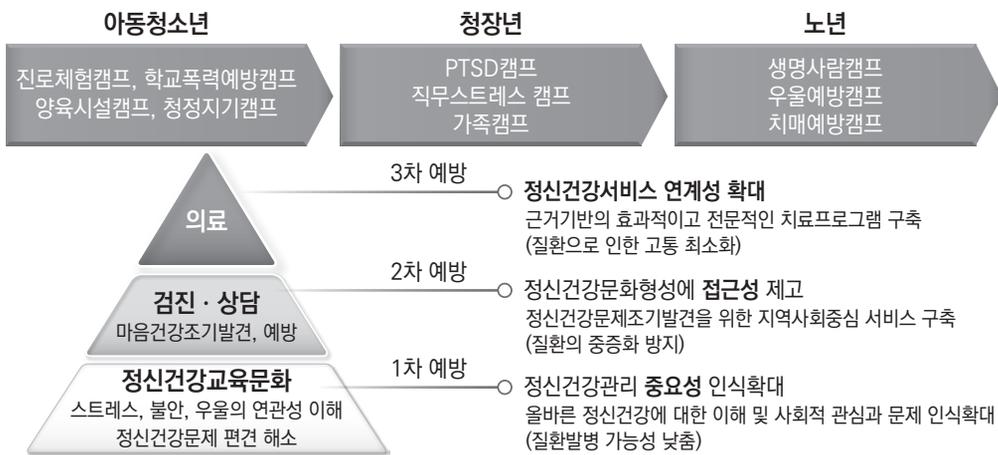
○ 국립공주병원의 자연환경과 유희 시설을 활용해 만든 곳으로, 중부권(대전, 충청, 세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특성별 정신건강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음건강센터는 국립정신병원(공주병원)으로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중부권 정신건강사업 연계 체

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 먼저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우울 예방 등의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정신질환 인식개선과 예방을 지원하고,
- 아동 정서행동 문제, 성인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건강검진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수행하며,

**〈참고: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



○ 심리 지원과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캠프 등을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수행할 예정이다.

■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 2월, 보건복지부) 등 정신건강 정책 흐름에 맞춰 개소한 시설로서,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현장 모델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이다.

■ 23일(목)에 열린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해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국립공주병원 김영훈 원장은 “마음건강센터의 개소는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실

행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대국민 정신건강 통합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내용

-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통합서비스 제공

〈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제공되는 원스톱 서비스 〉

- ① (마음건강캠페인)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심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 ② (마음건강교육) 생명 존중, 우울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 지원
- ③ (마음건강검진) 아동 정서행동 문제, 성인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 ④ (마음건강상담) 정신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전문 상담
- ⑤ (마음건강캠프) 심리 지원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 13400, 2017. 2. 22.

V

**정부, 저출산 대책 더욱 강력히 추진!**

- 경제계,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총력 대응
- 3월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운영해 저출산 대책 점검, 보완

■ 정부는 오늘(2017. 2. 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 수 40만 6000명, 합계출산율 1.17)를 무 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음.

■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으로 바뀌도 록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 검, 보완할 계획임.

○ 무엇보다 청년의 고용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참고로 첨부한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1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 과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b>◆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b>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확대(0.2→3만 2000명) *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정부 600, 기업 300, 개인 300)	
	▶청년인턴채용 확대(1→5만 명)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설(500팀 내외 지원) *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대표자 대상, 1년간 최대 1억 원 지원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신설(160억 원 조성)	
주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지원 확대(0.5→1만 호)	
	▶신혼가구(혼인 후 5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3만 4000명 추가 지원)  *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 포인트, 2017. 상)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지원 확대(1만 호 추가 지원)	
	▶신혼부부·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 확대(2000호 추가 지원)	
기타	▶서민·중산층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등에 대한 혼인세액공제 도입 추진  * 1인당 50만 원, 맞벌이 100만 원	
<b>◆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b>		
임신·출산	▶임신 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20% 포인트 일괄 인하(2017. 1.)  * 상급종합 60% → 40%, 종합병원 50% → 30%, 병원 40% → 20%, 의원 30% → 10%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2017. 10.)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2017. 7. 시행)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확대  *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 원 초과액의 90% 지원 →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만취약지 2곳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 추가 선정</li> <li>▶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li> <li>* 자녀 수에 무관,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li> </ul>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li> <li>* 저소득 한부모 월 10만→1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15만→17만 원</li> <li>▶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li> <li>* 다문화 유치원 확대운영(60개원→9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운영(124교→160학급),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운영(180교→200교)</li> </ul>
<b>◆맞춤형 돌봄 확대</b>	
맞춤형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등 공공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li> <li>* 국공립 180개, 공공형 150개, 직장 80개 신규 확충</li> <li>*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16년 30% → 2017년 32%</li> <li>▶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 추가 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인상*</li> <li>* 지원 단가 상향(단독 3→4, 공동 6→8억 원)</li> </ul>
돌봄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000명 추가 지원)</li> <li>* 오후 돌봄시간 자율 연장운영(17~19시),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2016. 신축 218실 → 2017. 신축 200실, 전환 90실, 리모델링 1706실)</li> <li>▶아이 돌봄 이용 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li> <li>* (종일반 이용 연령) 24개월 이하→36개월 이하, (돌보미 양성) 1.9만 명 → 2.1만 명</li> <li>▶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실시(6월)</li> </ul>
<b>◆일·가정 양립 일상화</b>	
근로 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li> <li>* 의무화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li> <li>** 1828개사 → 2800개사(1000개사 추가 확대)</li> <li>▶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li> <li>* 간접노무비: 근로자당 월 40만 원, 인프라 지원 신설: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li> </ul>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135만→150만 원)</li> <li>▶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만→30만 원),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li> <li>* 육아휴직자 수 1만 명 추가 확대 목표</li> <li>▶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인상(월 150만→200만 원)</li> <li>* 동일 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특례</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인구정책총괄과, 13402, 2017. 2. 22.

VI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 구제에 나선다!**

-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출범
-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지역권익옹호기관 지원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개정(2017. 1. 1. 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균)을 2월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위탁 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신고 접수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 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 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지역권익옹호기관(17개, 지자체 위탁)은 실무자 교육 등을 거쳐 8월 개소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 장애인 학대 판정 도구 및 지표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한다.

○ 둘째,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 8월 개소)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해 전국 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 셋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장애인권익지원과, 13409, 2017. 2. 24.